정 관

定 款

SGC 이테크건설

00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SGC이테크건설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GC eTEC E&C Co., Ltd.로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플랜트 및 일반산업설비의 사업관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시운전 및 보수, 운영업
2. 플랜트 수출업
3.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준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4.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 시설업
5.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6.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7. 폐기물 종합처리업
8. 철강재 설치 공사업
9. 해외건설업
10. 전문소방설비 공사업
11. 시설물 유지관리업
12. 건설사업 관리(CM)업
13. 부동산매매, 임대, 임대관리업
14. 수출입업 및 위탁대행업
15. 화물자동차 터미널사업
16. 석유류 판매업
17.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업
18. 자동차 운송 알선업
19.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투자, 설치 및 운영업
20. 에너지절약사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21.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22. 환경컨설팅업
23. 산업용 고순도 가스(질소 및 수소가스) 제조 및 판매업

24. 신재생에너지사업
25. 부동산 개발업
26. 환경관리 대행업
27.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
28. 해외건설 용역업
29. 해외공사 수주 및 개발업
30. 해외자원 개발사업
31. 국내/외 전력생산 및 판매업(추가 2012.3.9)
3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추가 2012.3.9)
33. 고순도 합성석영 제조 및 판매업(추가 2013.3.8)
34. 반도체용 석영 도가니 제조 및 판매업(추가 2013.3.8)
35.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업(추가 2018.3.16)
36. 위생접객업(목욕장,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특수목욕장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업(추가 2018.3.16)
37. 전기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사무소, 출장소, 공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gcete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개정 2021.3.19)

제 2 장 주 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 총수는 이천만주(20,000,000주)로 하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개정 2019.3.25)

제 6 조(주식 및 주권의 발행과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2. (삭제 2019.03.25)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4.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3.9)

제 6 조의 2(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의 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3.9)

제 6 조의 3(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제6조의2 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 수와의 합계가 제6조의2 제1항에 정한 범위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반 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 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본조에서"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2. (삭제 2012. 3. 9)

3.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 일수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9.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매입, 상환토록 한다.

10. 상환기간은 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시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1. 상환기간내에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제10항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점은 발생시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13.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3.9)

제 6 조의 4(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5)

제 7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생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2.3.9)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

(7)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2.3.9)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3.9)

제 7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2.3.9, 개정 2013.3.8)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⑵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⑶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⑷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

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3.3.8)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3.9)

제 7 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 한다.(개정 2021.3.19)

제 7 조의 4(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 8 조(명의개서 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19.3.25)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삭제 2019.3.25)

제 10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1 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3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 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3.9)

제 12 조의 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9)

제 13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9.3.25)

제 4 장 주주총회

제 14 조(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모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및 감사후보자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1.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

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1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2 조(의결권 불통일 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26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9 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3.9)

제 32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전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2.3.9)

2.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3.25)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 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7 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8 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39 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제 40 조(감사의 선임·해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개정 2021.3.19)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추가 2021.3.19)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추가 2021.3.19)

제 41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9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2 조(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0조 제3항 및 제31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3.9)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12.3.9)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2012.3.9)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2.3.9)

제 43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45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6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 447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3.9)

(1)~(3) (삭제 2012.3.9)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2.3.9)

7. 제6항의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2.3.9)

8.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제 46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 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9.03.25)

제 47 조(잉여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8 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3.9)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신설 2012.3.9)

제 48 조의 2(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6월 30일(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상법 462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⑴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⑵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⑶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⑷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⑸「상법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⑹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 한다.(개정 2021.3.19)

5. 제6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3.25)

제 49 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이 회사는 이 정관의 취지에서 이사회의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5항, 제7조의4, 제12조의2, 제31조의2, 제33조, 제46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 생략

제 2 조(준용규정) 생략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3항·5항의 개정규정(감사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하며, 제40조 4항·5항(감사 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